

대전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가합4941(본소), 2012가합7049(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따른 채무이의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합자회사 대전환경공사

변론 종결 2014. 1. 29.

판결 선고 2014. 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1.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0. 2. 19. 접수 제31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법원이 2012카기136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8.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1) 반소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1. 8. 30. 망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전 849m²와 위 D 전 861m²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및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1) 망 B은 2007. 9. 7. 대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전 1,689m²와 D 전 861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망 B은 2008. 5.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1) 망 B은 2008. 6.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위 F 전 1,689m²(511평) 중 330m²(100평)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8.
6. 27., 잔금 중 9,000만 원은 2008. 7. 31.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7,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2) 망 B은 2008. 9. 29. 피고에게 위 F 전 1,689m² 중 132m²(40평)를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만 원은 2008. 10. 1., 잔금 4,500만 원은 2008. 11. 9.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3) 망 B은 2009. 1. 3. 피고에게 위 F 전 1,689m² 중 132m²(40평)를 8,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4) 망 B은 2009. 1. 19. 피고에게 1, 2, 3차 계약을 합하여 위 F 전 1,689㎡ 중 595㎡(180평)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09. 1. 30.

지급받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4차 계약'이라 한다).

5)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6) 망 B은 2009. 8. 14. 피고에게 위 F 전 1,689㎡ 중 245㎡(74평)를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5차 계약'이라 한다).

라. 위 F 전 1,689㎡의 분할 및 권리변동

1) 위 F 전 1,689㎡는 2009. 12. 16. 대전 대덕구 C 전 849㎡, H 전 226㎡, F 대 614㎡로 분할되었다.

2) 망 B은 2010. 2. 19.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2. 16.자 대여금 1억 5,7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0. 2.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 B은 2010. 3. 9. 피고에게 4, 5차 계약을 합하여 위 F 대 614㎡, 위 H 전 226㎡와 위 F 지상에 건축한 2층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6차 계약'이라 한다).

4) 망 B은 2010. 3.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2009. 3. 17.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위 F 대 614㎡, 위 H 전 226㎡에 관하여 6차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망 B은 2010. 3. 15. 위 F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6차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망 B은 2010. 9. 16. 피고에게 위 C 전 849㎡를 6억 4,2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0. 9. 16.에, 잔금 4억 8,250만 원은 2010. 12. 16.에 지급받고, 잔금 중 3억 8,000만 원은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7차 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의 위 C 전 849㎡와 위 D 전 861㎡에 관한 소유권취득

망 B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2. 29. 위 C 849㎡와 위 D 전 861㎡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로 마친 위 C 전 849㎡와 위 D 전 861㎡에 관한 2010. 2.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 또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1) 망 B은 2010. 2. 16. 피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2) 또한 망 B이 2010. 2. 16. 피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 B은 피고의 I의 동생과 도박자금과 관련된 금전거래과정에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무효이다.
- 3) 나아가 망 B이 2010. 2. 16. 피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금채무는 망 B과 피고 사이에 1차 계약 내지 6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
- 4) 마지막으로 망 B의 2010. 2. 16.자 1억 5,700만 원 차용금 채무가 위 3)항의 상계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 B과 피고 사이에 7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 및 중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은 2010. 2. 16. 피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1억 7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1.7%,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자 월 1%, 변제기 2010. 10. 1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관한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12. 7.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망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강제집행비용 합계 1억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2010. 2. 16. 망 B과 사이에 기존에 대여한 금원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E은 2010. 2. 19. 망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1차 계약 내지 6차 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차 계약 내지 6차 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차 계약에 따라 망 B에게 2008. 6. 18. 계약금 6,000만 원, 2008. 6. 25. 중도금 5,000만 원, 2008. 7. 1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매수한 부분의 담보지분율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인수한 사실, ② 피고는 2차 계약에 따라 2008. 9. 29. 망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4,500만 원은 망 B의 요청에 따라 2008. 10. 초순경 소외 K에게 대신 지급하였으며, 잔금 4,500만 원은 2008. 11. 10. 망 B에게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3차 계약에 따라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매수한 부분의 담보지분율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인수한 사실, ④ B은 2009. 8. 14. 피고와 사이에 1, 2, 3차 계약을 합하여 형식적으로 4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피고는 망 B에 대한 2009. 3. 16.자 대여금 7,000만 원, 2009. 6. 17.자 1억 500만 원, 2009. 5. 21.자 1,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의 채권으로 5차 계약의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과 상계한 사실, ⑥ 피고는 4차 계약과 5차 계약을 합하여 6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차 계약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과 5차 계약의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의 합계가 6억 3,500만 원(= 4억 5,000만 원 + 1억 8,5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⑦ 피고는 6차 계약의 매매대상물인 위 F 지상에 건축한 2층 건물의 설계 및 신축비용을 전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중 일부는 망 B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매매대금은 망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5,700만 원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1차 계약과 2차 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후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인출한 사실, ② L과 M이 배서한 수표에 관하여 L, M은 망 B의 거래처로서 망 B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수표를 배서 없이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인출한 수표를 피고나 제3자 명의로 입금한 2008. 6. 18.자 수표 2,000만 원, 2008. 6. 25.자 수표 2,000만 원, 2008. 7. 10.자 수표 4,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8,000만 원²⁾에 불과하여 피고의 망 B에 대한 대여금 1억 5,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동대전농협 대덕지점,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점, 부강농업협동조합, 신탄진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덕지점, 서부농업협동조합 월평지점, 신탄진농업협동조합 목상지점,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탄진지점, 유성농업협동조합, 유성농업협동조합 장대동지점, 신탄진우체국, 주식회사 국민은행 용전동지점, 현도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경동지점,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고, 이 부분 매매대금은 망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억 5,700만 원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참조), 망 B와 피고 사이에 1, 3, 4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것은 이행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대전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도로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달리 망 B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절차이행 또는 인수채무의 변제를 최고하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7차 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7차 계약의 매매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 B은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위 C 전 849㎡를 6억 4,2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8,250만 원은 2010. 12. 16.에 각 지급받고, 잔금 중 3억 8,000만 원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억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7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망 B에 대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2010. 9. 17. 3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② 잔금 중 3억 8,000만 원은 피고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 ③ 피고는 2010. 12. 16. 잔금으로 망 B의 채권자 O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대위변제금 및 이에 관한 비용 합계 1억 60만 원을 지급하여 2010. 12. 17. 위 C 전 849㎡와 위 D 전 861㎡에 관하여 마친 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7차 계약 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데, 7차 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위 C 전 849㎡가 피고에게 인도되기 이전에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시도재산대부료로 190만 원을 지출하여 잔금지급에 갈음한 사실, ⑤ 망 B은 2011. 6. 14. 피고에게 위 C 전 849㎡에 관하여 대덕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즉시 위 토지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⑥ 망 B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1. 10. 30. 대덕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사실, ⑦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2012. 3.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 ⑧ 피고는 2012. 5. 1. 이 법원 2012가합4569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소장 부분의 송달로 7차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7차 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7차 계약은 2012. 5. 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명목으로 상계한 피고의 망 B에 대한 대여금 1억 5,700만 원은 계약해제로써 다시 되살아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 B과 피고 사이에 4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망 B의 대전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B은 2009. 8. 14. 피고와 5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5차 계약의 매매대상인 위 F 전 1,689㎡ 중 245㎡(74평)에 관하여 피고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위 토지부분에 관한 담보지분율에 해당하는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망 B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09. 12. 10.부터 2010. 4. 8.까지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게 4차 계약까지 인수한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망 B으로부터 매수하여 2010. 3. 15.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F 대 614㎡와 위 H 전 226㎡에 관하여(위 5차 계약의 매매대상을 포함한다) 2010. 4. 19.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게 피고가 매수한 부분의 담보지분율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피고는 2010. 4. 20.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피고가 매수한 부분의 담보지분율에 해당하는 원금 190,932,610원, 이자 9,067,390원, 합계 200,000,000원(= 190,932,610원 + 9,067,390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대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F 대 614㎡와 위 H 전 226㎡를 담보로 3억 원을 다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5차 계약 체결 당시 망 B이 책임지기로 부분에 관하여 망 B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위 금원을 대위변제한 다음날인 2010.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2. 7.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연

판사정희영

판사최형준

별지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법원 2012. 3. 20.자 G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2012.

8. 20. 이 법원 2012카기1368호로 위 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정지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취지로 선행한다. 다만,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08. 9. 30.자 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전원예농협 법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2차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K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N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K이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은 2차 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